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그동안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이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었던 식품위생법은 일부 법사위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법사위에 계류되고 말았다. 이에 이번 월간 한농연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개요와 향후 통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300제곱미터 이상이던 원산지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외에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고 새로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왜 식품위생법을 재개정했는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제도가 올해 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수입 식육의 국산둔갑 방지와 공정거래 등을 위해 시행 된 이 제도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진 과정에서 과태료 및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완화되고 단속권마저도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배제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위반은 식당의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대형 음식점보다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원산지표시대상 축소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요식업체 압력에 음식점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를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식품위생법 운용기관인 식약청이 원산지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일임하고,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식육 원산지 단속은 유통단계부터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연계돼야 하며, 과학적인 조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농관원이 배제되면 체계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대상 품목도 식육에(내년부터 쌀도 시행 될 예정)만 한정되어 있어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보다 많은 품목도 음식점원산지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은 없는가?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이용 쇠고기를 뺀 나머지 쇠고기 관련 음식

및 국회 통과 전망

과 돼지고기 · 닭고기 ·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2009년에나 가서야 알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것도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되는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가능하다. 이들 품목의 원산지 의무표시 시기가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인 탓이다.

특히 '원산지 식별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소비단계에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02년 12월부터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행정법 2002-1465, 2002.12.17), 일본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일환으로 '04년 12월부터 특정요리(샤브샤브, 스키야키, 스테이크 등) 취급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 향후 전망과 한농연 대응활동 방안은?

현재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물론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 확보라는 공익적인 측면과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인해 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많이 성숙되어 있다.

단, 일부 요식업체들의 반발이 변수다. 현재 요식업체들은 대상 품목과 대상 업소가 확대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요식업체들의 반발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포퓰리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한농연에서도 이번 식품개정안 입안을 주도한 단체로써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농촌지역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설득 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단체는 물론 법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법 통과의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국민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농업적 인물로 각인시켜 낙선 · 낙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